

1. 개정이유

주변시세가 과도하게 낮은 지역 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시 사업자가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, 임대주택 공급·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**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
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**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속성을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임대시세의 결정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3조(소득구간별 차등화) ① ~ ④ (생략) ⑤ <u>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시세를 경감하여 인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) ① (생략)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</p>	<p>제2조(임대시세의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속성을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</p> <p>제3조(소득구간별 차등화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제6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/p>

하는 사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제8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) ① (생략)

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----- 제6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제6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